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8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이개호·김영배·박수현

정진욱 • 이언주 • 어기구

김현정 · 장종태 · 민병덕

박지원 • 한병도 • 전진숙

의원(12인)

제안이유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인과 사회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변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의 마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마음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정부는 임기 내에 일반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적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 예방과 회복이라는 전(全) 단계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상담사 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실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더불어 국민들은 상담사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상담 서비스의 질 저하와 더불어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함.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음 건강 관리와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및 전문상담서비스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2급은 공통적 상 담역량을 갖춘 자, 1급은 전문영역의 상담역량을 갖춘 자로 구분함 (안 제5조).
- 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과 실무수련 요건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2급 전문심리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2급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영역의 상담 관련 과목과 실무수련요건을 이수함과 동시에 3년 이상 전문심리상담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자에게 1급 전문심리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제8조).

- 다.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수런 및 감독관에게 수련지 도 감독 및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9조).
- 라.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보 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 10조).
- 마. 전문심리상담사의 등록, 상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바.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보장의무, 상담기록부 등 기록의무 등 전문심리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사. 내담자가 아닌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 아. 전문심리상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 자. 상담에 관한 연구, 전문심리상담사의 윤리 확립, 전문심리상담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카.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니면 유료로 상담행위를 하거나 유료전문심리 상담센터를 개소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

- 타.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거나 상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는 자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
- 파.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부칙 제3조).
- 하. 기존 민간자격증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성 높은 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심리상담"이란 마음 건강,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과 같은 영역에 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조력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 2. "전문심리상담사"란 상담 관련 교육과 실무수련을 통해 전문적 자격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심리상담의 전문영역"이란 전문심리상담사가 접하는 대상과 문제 유형에 따라 개인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노인상담, 가족상담, 기업·조직상담, 군 상담, 진로상담, 학습상담, 중독상담, 트라우마 상담, 명상상담, 영성상담, 목회상담, 호스피스상담, 예술상담

등으로 분류한 상담영역을 말한다.

- 4. "수련기관"이란 전문심리상담사 실무수련을 위해 한국전문심리상 담교육평가워이 인증한 기관을 말한다.
- 5. "내담자"란 전문심리상담사로부터 심리상담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6. "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은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와 독립 된 기관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 수련기관 등을 감독하고 평가하며 인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 7. "한국전문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이란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 및 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과는 독립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1·2급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관리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 8.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은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 및 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 한국전문심리상담자격관리원과는 독립된 기관으로 전문심리상담사 1급과 2급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시행 및 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직무) ① 2급 전문심리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 2. 심리검사 및 행동관찰 등을 통한 평가
- 3.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 4. 그 밖에 상담직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1급 전문심리상담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와 다음 각 호의 직무

를 수행한다.

- 1. 상담에 관한 자문 및 2급 전문심리상담사의 교육과 지도ㆍ감독
- 2. 그 밖에 상담직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상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등

- 제5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순 서로 1급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을 갖는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후 졸업하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후, 제7조에 따른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순서로 2급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을 갖는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후 졸업하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후. 제7조에 따른 2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 상담사가 될 수 없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전문심리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 되지 아니한 사람
 -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7조(국가시험) ① 1급 및 2급 전문심리상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한국전문심리상

담사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다.

- ② 국가시험과목은 1급은 수련지도감독, 상담행정 및 정책, 상담프로그램 개발, 상담연구방법 4개를 포함하여 이외에 전문자격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으로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에서 정한다.
- ③ 국가시험과목 2급은 상담이론, 상담면접, 심리검사, 집단상담, 상담윤리, 상담실습, 다문화 상담 7과목을 포함하여 이외에 2급자격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으로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에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시험의 과목 및 방법, 유사과목 인정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전문심리 상담사국가시험원에서 정한다.
- 제8조(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만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 1. 2급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문심리상담사 업무에 종사하고 제9조제1항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만 2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제9조제1항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

람

- 2.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9조(실무수련) ①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수련과 이에 대한 수련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1. 1급 실무수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루 어지는 실무수련시간 및 2급 실무수련시간을 포함하여 5천 시간 이상
 - 가. 실무수련 사항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각 수련사항 5회마다 수련지도감독 1회를 포함한다.
 - 나. 이외의 수련사항은 전문영역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으로 정한 다.
 - 2. 2급 실무수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루 어지는 실무수련 시간을 포함하여 2천 시간 이상(실무수련 사항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각 수련사항 5회마다 수련지도감독 1회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련과정, 실무수련기관 및 실무수련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의 취득 등과 관련한 사항
- 2. 전문심리상담사 자격 박탈 및 징계와 관련한 사항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등급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전문심리상담사 등록

- 제12조(전문심리상담사 등록) ① 전문심리상담사가 제3조에 따른 전문 심리상담사 직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상담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13조(등록거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등록취소)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심리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전문심리상담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위원회의 등록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 3. 사망한 경우

제4장 상담센터

- 제15조(상담센터의 개설)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심리상담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상담센터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전문심리상담사가 상담센터를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개설 등록을 한 전문심리상담사가 그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공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상담센터의 개설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상담센터의 개설등록 을 한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3. 제12조에 따른 전문심리상담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상담행위를 하게 한 경우
 - 4.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담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수정한 경우
 -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유출하는 경우
 -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경우

제5장 전문심리상담사의 의무

- 제17조(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전문심리상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8조(비밀보장의무) 상담직무를 수행하였던 전문심리상담사 또는 수행하고 있는 전문심리상담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상담기록부 등) ① 전문심리상담사는 상담기록부 및 그 밖의 상담에 관한 기록(이하 "상담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상담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전문심리상담사는 상담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전문심리상담사는 상담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기록 열람 등) ① 내담자는 전문심리상담사에게 본인에 관한 상담기록부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 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심리상담사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전문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유출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명의대여 등 금지) ① 전문심리상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등 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보수교육) ① 전문심리상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 전문심리상담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

- 제23조(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 ① 전문심리상담에 관한 연구와 발전을 위해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전문심리상담에 관한 정책·제도·법령 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 2.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경영지도
-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 4.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④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협회의 조직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협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4조(윤리규정 제정)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상담 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5조(감독)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7장 보칙

- 제2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제7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한 자
-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제30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 제27조(전문상담행위의 제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상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상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담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전문심리상 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전문심리상담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담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수정한 자
 -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유출한 자
 -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 5.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 6. 제27조를 위반하여 상담행위를 한 자
 - ② 제29조를 위반하여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로서 전문심리상담

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담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상담기록부 등 내용의 확인 요청을 거부한 자
 - ② 제22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 따른 자격과 제12조에 따른 전문심리상담사 등록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거나 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제3조(상담센터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상담센터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기존 민간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민간자격증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